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3. 14
행정재무위원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2월 2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97. 3. 14)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과
- 도로 명칭의 변경 및 지번 변경 등으로 경계 불분명한 지역
- 일부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나. 주요골자

1)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

- 영등포 제2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22번지로 변경
- 당산 제1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영등포구 당산동3가 250번지로 변경

2)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 지역

- 신길1동장 관할구역 중 대방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신길동 123번지 8호, 10호, 125번지 2호, 3호, 128번지 2호에서 4호까지, 133번지 2호에서 6호까지, 193번지 1호, 460번지 4호에서 10호까지, 461번지 1호에서 2호까지, 462번지 13호, 470번지 11호에서 14호까지를 신길7동장 관할로 함.
- 신길7동장 관할구역 중 대방로 서쪽에 위치한 신길동 1164번지, 1165번지, 1166번지를 연하는 북쪽 지역을 신길1동장 관할로 함.

3) 도로명칭 변경 및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경계 불분명 지역

- 도림동 중 144번지 96호에서 143의 19, 144의 185, 145의 3, 153의 9, 152의 100, 210, 123, 174, 150의 16, 151의 4호를 연하는 소능선 이동지역을 도림1동장 관할로 함.
- 신길동 중 신길로 이서지역 중 신길동 253의 215를 기점으로 253의 29, 330의 38, 329의 21, 342의 89, 347의 40, 380의 19호를 연하는 이북지역을 신길3동장 관할로 함.
- 신길동 중 도신로 이남지역 중 신길동 221번지 44호를 기점으로 223, 235, 249, 239의 2, 240의 11, 243의 10, 15, 21, 32, 29, 247의 21, 244의 19에 연하는 신길로 이동지역 중 신길1동

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신길4동장 관할로 함.

- 신길동 중 신길로 이서지역 중 신길동 337의 256호를 기점으로 253의 24, 331의 16, 329의 29, 342의 134, 355의 81, 379의 7, 405의 37, 407의 37호를 연하는 이남지역을 신길5동장 관할로 함.
- 신길동 중 신길로 이동지역 중 신길동 3513번지를 기점으로 3297의 2, 3233, 243의 33, 31, 산 166, 2253, 2261, 2772, 2350, 2340, 1447, 568, 623번지를 연하는 이남지역을 신길6동장 관할로 함.
- 대림동 중 도림로 이남지역 중 대림동 906의 133호를 기점으로 700의 1, 864의 13, 898번지를 연하는 이동지역을 대림1동장 관할로 함.
- 대림동 중 도림로 이남지역 중 대림동 1053번지를 기점으로 709의 4, 862의 6, 990의 46, 991의 1호를 연하는 이서지역을 대림2동장 관할로 함.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허 영훈)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과 그 동안 도로 명칭이나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하여 변경된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므로써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신길1동과 신길7동의 경계를 신길동 460번지 일대 경계지역의 삼환아파트 및 한성아파트의 신축을 계기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영등포 제2동 및 당산 제1동의 “동사무소의 소재지란”을 개정하는 것이나 동 행정구역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도로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 또한 경계의 단순 표기로 인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도림 제1동 등 7개 동의 “일부지역 관할란”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신길 제1동과 신길 제7동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 등 모든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96년 4월말 입주 완료 예정인 삼환아파트 신축단지에 신축하는 11개 동 중 3개 동이 신길 제1동과 제7동 경계지역에 걸쳐있어 동 경계 조정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기관에서 동 경계 조정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고 '97. 11. 7 ~ 12. 4까지 28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의 제기 사항이 없었으며, 조정대상 지역의 설문조사 (980세대) 결과 응답자 (760세대) 중 65%(494명)가 찬성하였다고는 하나 동사무소와의 거리 관계나 인구의 증감 및 면적의 증감 등 동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능률면의 검토와 교육, 교통문제 등 주민 편의적 면 뿐만 아니라 조정지역 주민의 성향 등까지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審查結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13호
----------	----------------

제안년월일 : 1997년 5월 15일

제안자 : 이정운의원외10인

1. 수정이유

일부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개정안의 내용 중 신길1동의 일부지역 관할 조정안은 일부 주민이 찬성하지 않고, 신길7동 동 행정이 위축될 소제가 많으며, 동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 중 불합리한 동 경계 조정지역 내역에서

가. 신길1동장 관할구역 중 대방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신길동 123번지 8호, 10호, 125번지 2호, 3호, 128번지 2호에서 4호까지, 133번지 2호에서 6호까지, 193번지 1호, 460번지 4호에서 10호까지, 461번지 1호에서 2호까지, 462번지 13호, 470번지 11호에서 14호까지를 신길7동장 관할로 원안대로 조정하고 (도면 황색)

나. 신길7동장 관할구역중 대방로 서쪽에 위치한 신길동 1164번지, 1165번지, 1166번지를 연하는 북측 지역을 신길1동장 관할 구역으로 한다(구청장 제출 원안) 신길7동장 관할 구역중 대방로 서쪽에 위치한 신길동 1238번지, 1234번지, 1248번지, 1247번지, 1251번지를 연하는 북측 지역을 신길1동장 관할 구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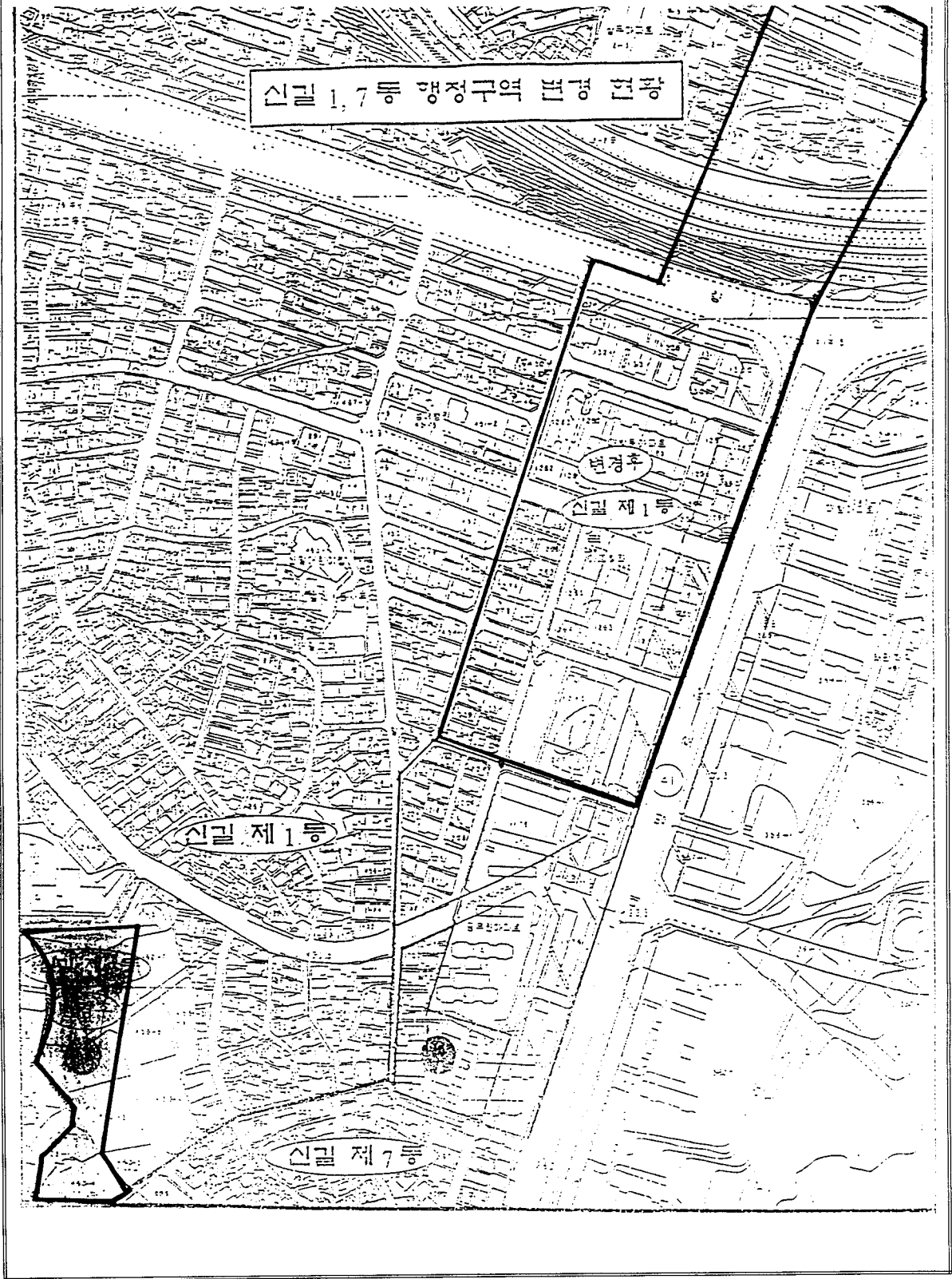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 제1동의 일부지역 관할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길동 중 95번지에서 우신초등학교를 연하여 도신로 이남 중 신길동159번지 35호를 기점으로 한 신길동 202, 144번지 190호, 123번지 6호, 460번지 3호, 457번지 3호, 456번지, 455번지 1호, 1238번지, 1234번지, 1248번지, 1247번지, 1251번지를 연하는 대방로 서쪽 지역.

신길1, 7동 행정구역 변경 현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증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년월일 : 1997. 2. 1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과
- 도로명칭의 변경 및 지번변경 등으로 경계불분명한 지역,
- 일부 불합리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2. 주요골자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

- 가. 영등포제2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22번지 2호로 변경
- 나. 당산제1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영등포구 당산동3가 250번지로 변경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지역】

- 가. 신길1동장 관할구역중 대방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신길동 123번지 8호, 10호, 125번지 2호, 3호, 128번지 2호에서 4호까지, 133번지 2호에서 6호까지, 193번지 1호, 460번지 4호에서 10호까지, 461번지 1호에서 2호까지, 462번지 13호, 470번지 11호에서 14호까지를 신길7동장 관할로 함.
- 나. 신길7동장 관할구역중 대방로 서쪽에 위치한 신길동 1164번지, 1165번지, 1166번지를 연하는 북쪽지역을 신길1동장 관할로 함.

【도로명칭 변경 및 지번변경 등으로 인한 경계 불분명 지역】

- 도림동중 144번지 96호에서 143의 19, 144의 185, 145의 3, 153의 9, 152의 100, 210, 123, 174, 150의 16, 151의 4호를 연하는 소능선 이동지역을 도림1동장 관할로 함.
- 신길동중 신길로 이서지역중 신길동 253의 215를 기점으로 253의 29, 330의 38, 329의 21, 342의 89, 347의 40, 380의 19호를 연하는 이북지역을 신길3동장 관할로 함.
- 신길동중 도신로 이남지역중 신길동 221번지 44호를 기점으로 223, 235, 249, 239의 2, 240의 11, 243의 10, 15, 21, 32, 29, 247의 21, 244의 19에 연하는 신길로 이동지역중 신길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신길4동장 관할로 함.
- 신길동중 신길로 이서지역중 신길동 337의 256호를 기점으로 253의 24, 331의 16, 329의 29, 342의 134, 355의 81, 379의 7, 405의 37, 407의 37호를 연하는 이남지역을 신길5동장 관할로 함.
- 신길동중 신길로 이동지역중 신길동 3513번지를 기점으로 3297의 2, 3233, 243의 33, 31, 산 166, 2253, 2261, 2772, 2350, 2340, 1447, 568, 623번지를 연하는 이남지역을 신길6동장 관할로 함.
- 대림동중 도림로 이남지역중 대림동 906의 133호를 기점으로 700의 1, 864의 13, 898번지를 연하는 이동지역을 대림1동장 관할로 함.
- 대림동중 도림로 이남지역중 대림동 1053번지를 기점으로 709의 4, 862의 6, 990의 46, 991의 1호를 연하는 이서지역을 대림2동장 관할로 함.

3. 사전예고 결과

- 예고기간 : '96. 11. 7. ~ 12. 4.(28일간)
- 예고방법 : 구보게재공고(영등포구공고 제1996-224호, 제1996-228호)
- 예고결과 : 이의제기사항 없음

4. 개정(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영등포제2동 및 당산제1동 동사무소 소재지 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22번지2호
-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50번지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도림제1동의 일부지역관할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림동중 144번지 96호에서 143의 19, 144의 185, 145의 3, 153의 9, 152의 100, 210, 123, 174, 150의 16, 151의 4호를 연하는 소농선 이동지역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1동의 일부지역관할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길동중 95번지에서 우신초등학교를 연하여 도신로 이남중 신길동 159번지 35호를 기점으로 한 신길동 202, 144번지 190호, 123번지 6호, 460번지 3호, 1164번지를 연하는 이북지역 및 노량진로 이북지역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3동의 일부지역관할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길동중 신길로 이서지역중 신길동 253의 215를 기점으로 253의 29, 330의 38, 329의 21, 342의 89, 347의 40, 380의 19호를 연하는 이북지역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4동의 일부지역관할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길동중 도신로 이남지역중 신길동 221번지 44호를 기점으로 223, 235, 249, 239의 2, 240의

11, 243의 10, 15, 21, 32, 29, 247의 21, 244의 19에 연하는 신길로 이동지역중 신길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5동의 일부지역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길동중 신길로 이서지역중 신길동 337의 256호를 기점으로 253의 24, 331의 16, 329의 29, 342의 134, 355의 81, 379의 7, 405의 37, 407의 35호를 연하는 이남지역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6동의 일부지역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길동중 신길로 이동지역중 신길동 3513번지를 기점으로 3297의 2, 3223, 243의 33, 31, 산 166, 2253, 2261, 2772, 2350, 2340, 1447, 568, 623번지를 연하는 이남지역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대림제1동의 일부지역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림동중 도림로 이남지역중 대림동 906의 133호를 기점으로 700의 1, 864의 13, 834의 13, 989번지를 연하는 이동지역

제4조<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대림제2동의 일부지역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림동중 도림로 이남지역중 대림동 1053번지를 기점으로 706의 4, 862의 6, 990의 46, 991번지 1호를 연하는 이서지역

부 칙

이 조례는 1997. 4. 7부터 시행한다.

신 구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구 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영등포구	영등포 제2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3번지 9호	영등포구	영등포 제2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22번지 2호
	당산 제1동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50번지 1호		당산 제1동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50번지

신 구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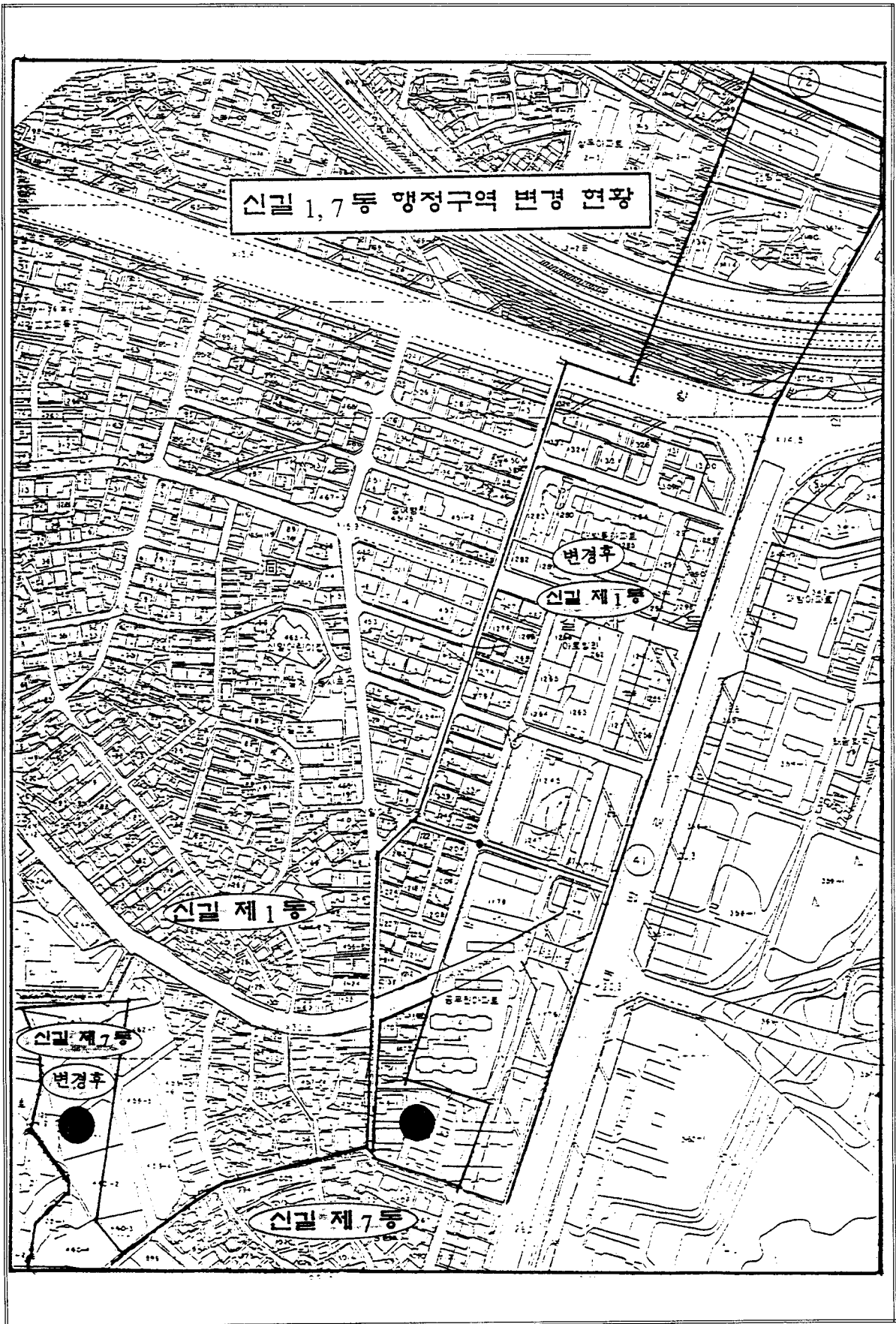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영등포구	도 립 계 1동	영등포구 도림동 75번지		도림동중 160번지 앞에서 32번지에 이르는 소농선 이동지역	영등포구	도 립 계 1동	영등포구 도림동 75번지		도림동중 144번지 96호에서 143의 19, 144의 185, 145의 3, 153의 9, 152의 100, 210, 123, 150의 16, 151의 4호를 연하는 소농선 이동지역
	신 길 계 1동	영등포구 신길동 456-2		신길동중 95번지에서 우신국교를 연하여 도신로 이남중 신길동 159번지 35호를 기점으로 한 신길동 202, 144번지 190호, 460번지를 연하는 이동지역 및 경인가도 이북지역		신 길 계 1동	영등포구 신길동 456-2		신길동중 95번지에서 우신초등학교를 연하여 도신로 이남중 신길동 159번지 35호를 기점으로 한 신길동 202, 144번지 190호, 123번지 6호, 460번지 3호, 1164번지를 연하는 이북지역 및 노량진로 이북지역
	신 길 계 3동	영등포구 신길동 268번지 4호		신길동중 경수도로 이서지역중 신길동 253의 20호를 기점으로 330의 19, 330의 18, 330의 6, 329의 31, 336의 2, 326의 55, 342의 43, 342의 91, 342의 49, 342의 69, 347의 65, 3477, 374번지를 연하는 이북지역		신 길 계 3동	영등포구 신길동 268번지 4호		신길동중 신길로 이서지역중 신길동 253의 215호를 기점으로 253의 29, 330의 38, 329의 21, 342의 89, 347의 40, 380의 19를 연하는 이북지역
	신 길 계 4동	영등포구 신길동 209번지 102호		신길동중 221번지 44호를 기점으로 하여 신길로에 연하는 223, 235, 249번지에 연하는 이동지역중 신길1동장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 길 계 4동	영등포구 신길동 209번지 102호		신길동중 도신로 이남지역중 신길동 221번지 44호를 기점으로 223, 235, 249, 239의 2, 240의 11, 243의 10, 15, 21, 32, 29, 247의 21, 244의 19에 연하는 신길로 이동지역중 신길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 길 계 5동	영등포구 신길동 422번지		신길동중 신길로 이서지역의 신길동 337의 256호를 기점으로 330의 13, 14호와 331, 329의 22, 28, 29, 30, 32, 33호, 336, 342의 48호 도로를경유 342의 353, 355의 39호, 379의 7호, 대림동 672~681번지를 연하는 이남지역중 대림동을 제외한 지역		신 길 계 5동	영등포구 신길동 422번지		신길동중 신길로 이서지역의 신길동 337의 256호를 기점으로 243의 24, 331의 16, 329의 29, 342의 134, 355의 81, 379의 7, 405의 37, 407의 35호를 연하는 이남지역
	신 길 계 6동	영등포구 신길동 3471번지 11호		신길동중 435번지를 기점으로 432, 429, 210의 5, 215의 1, 239, 240, 241, 244, 245, 274, 271, 272, 250의 16, 252의 77, 253의 205, 236의 278, 269, 291, 256의 102, 163, 156에 연하는 이남지역으로 시흥로 이동지역		신 길 계 6동	영등포구 신길동 3741번지 11호		신길동중 신길로 이동지역중 신길동 3513번지를 기점으로 3297의 2, 3233, 243의 33, 31, 산 166, 2253, 2261, 2772, 2350, 2340, 1447, 568, 623번지를 연하는 이남지역

신 구 문 대 조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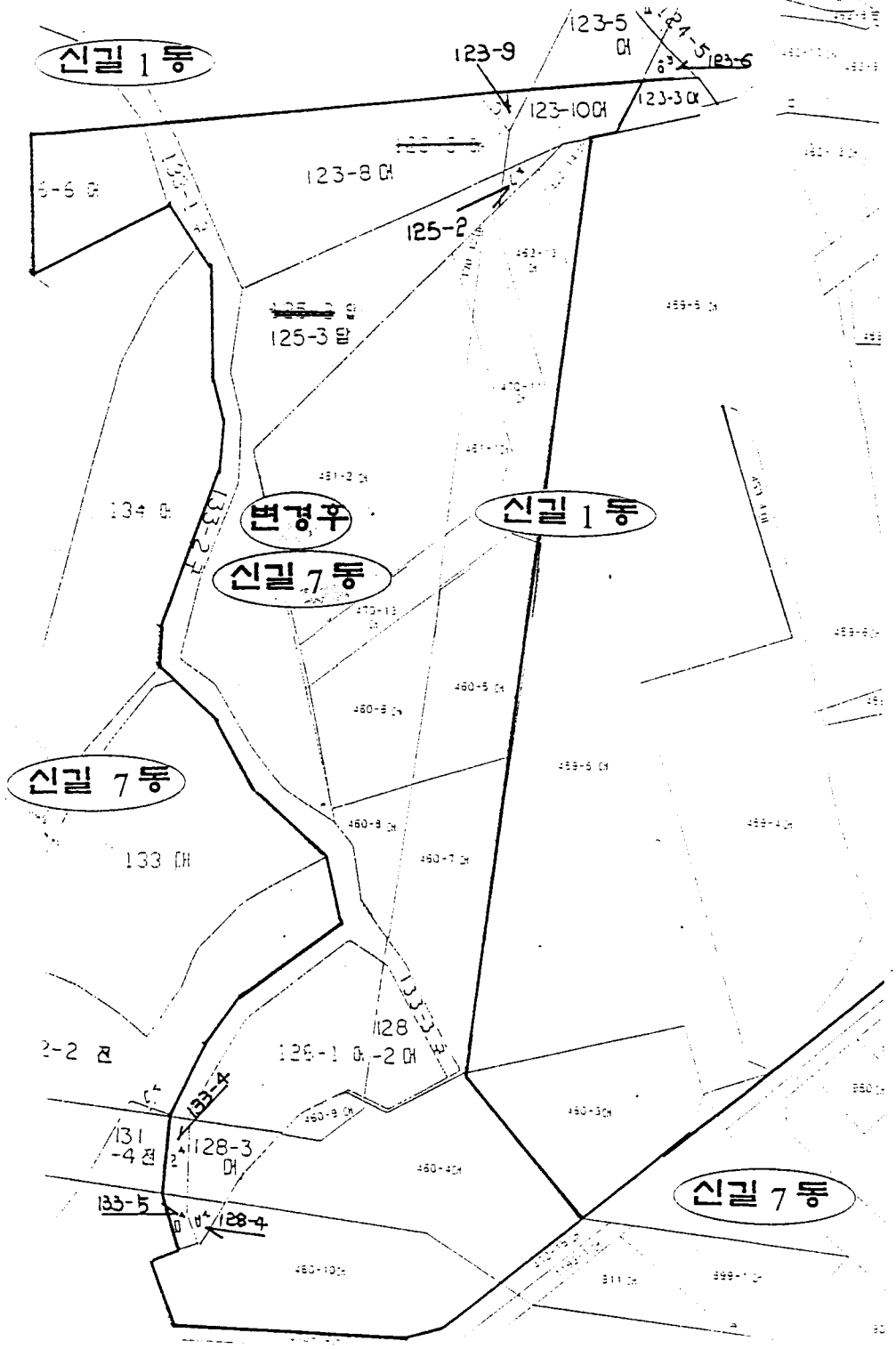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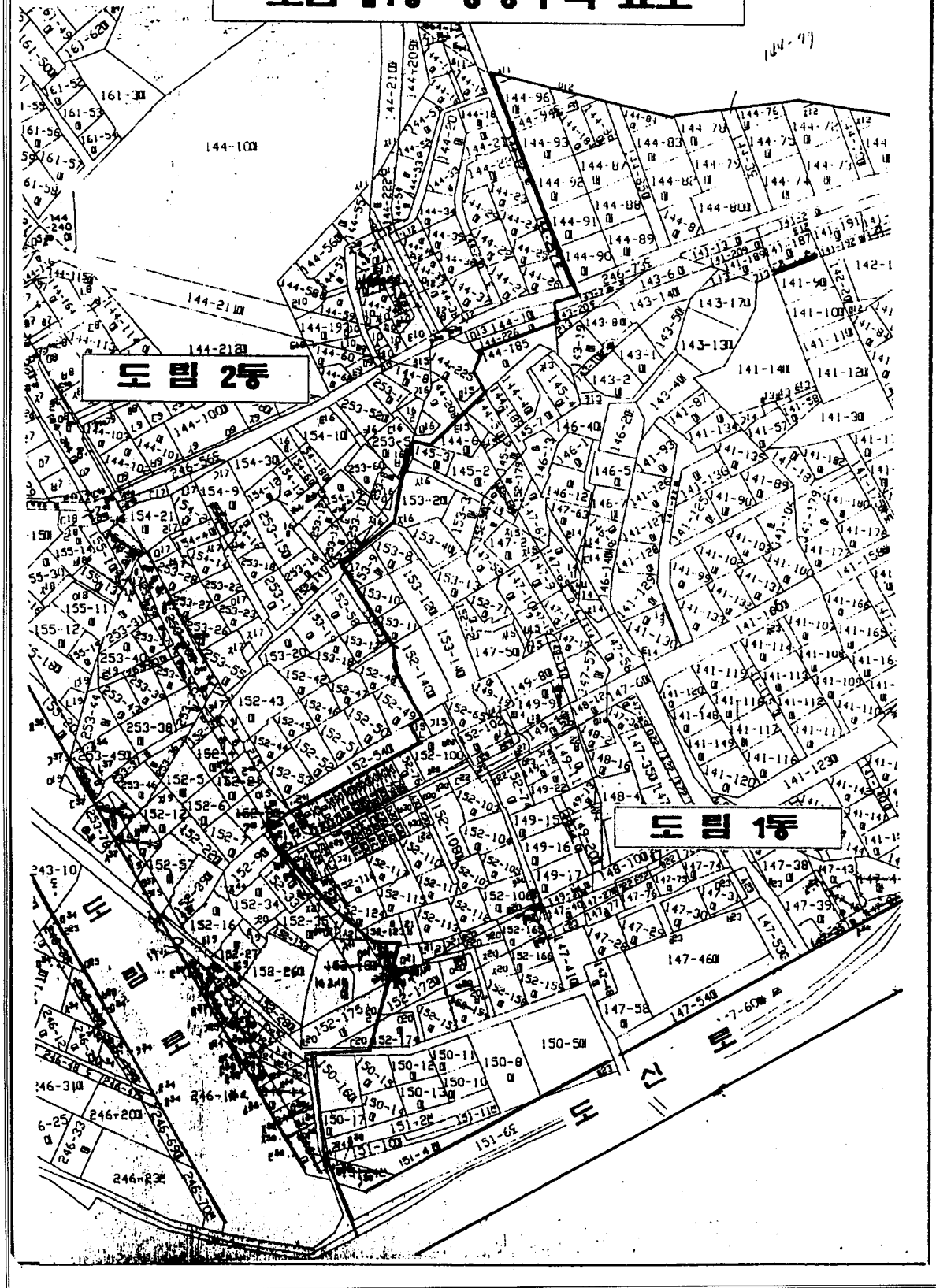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전지역 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영등포구	대 립 제1동	영등포구 대립동 899번지 2호		대립동중 952의 9호를 기점으로 959, 958의 2, 969, 934의 5에 연하는 소방도로와 934의 5에서 862, 1064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영등포구	대 립 제1동	영등포구 대립동 899번지 2호		대립동중 도림로 이남지역중 대립동 906의 133호를 기점으로 700의 1, 864의 13, 989번지를 연하는 이동지역
	대 립 제2동	영등포구 대립동 705번지		대립동중 1064번지를 기점으로 862, 680, 667번지를 연하는 도시계획도로 이서지역		대 립 제2동	영등포구 대립동 705번지		대립동중 도림로 이남지역중 대립동 1053번지 12호를 기점으로 706의 4, 862의 6, 990의 46, 991의 1번지를 연하는 이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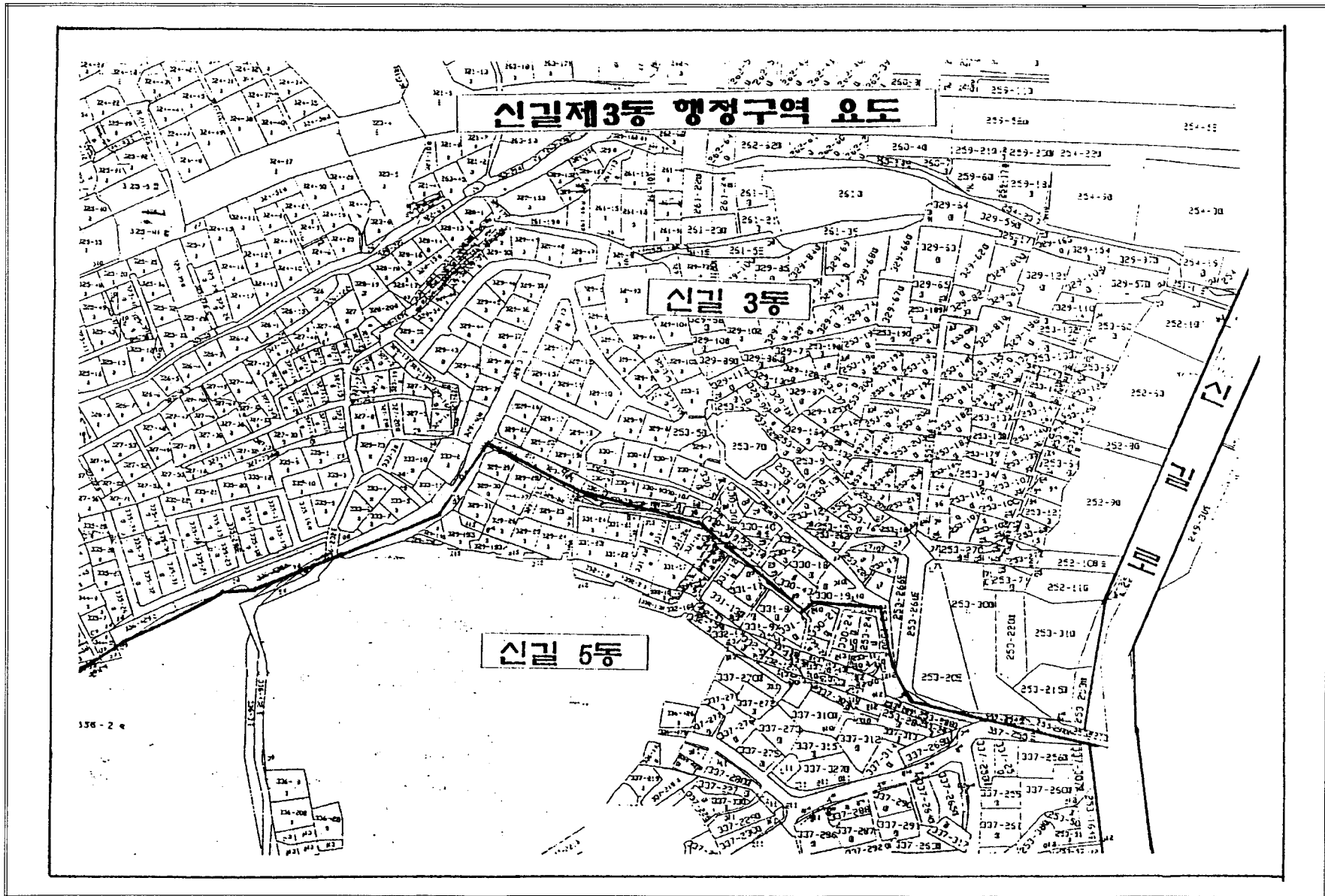


신길 1 동행정구역 변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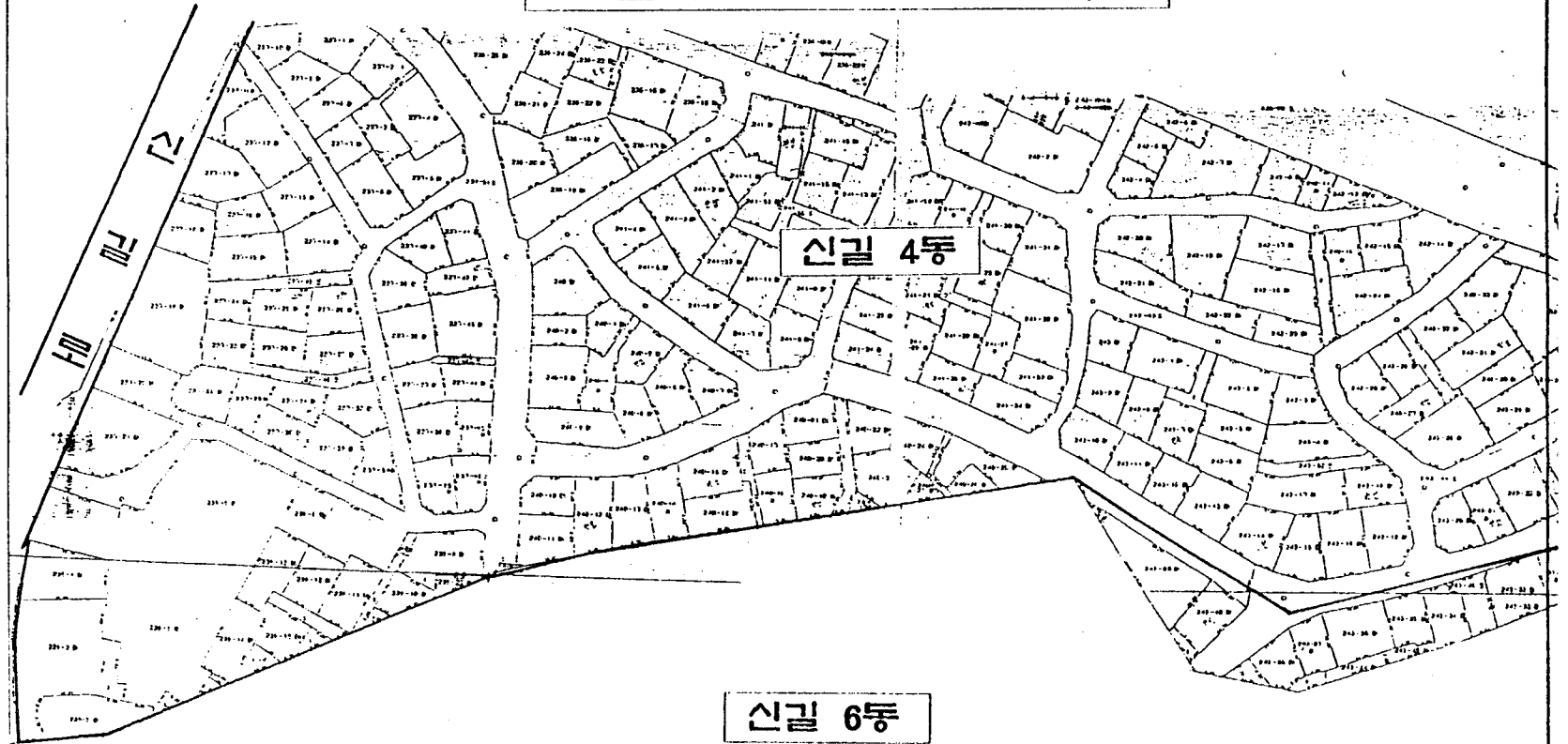


도림제동 행정구역 요도





신길제4동 행정구역 요도(1)



신길 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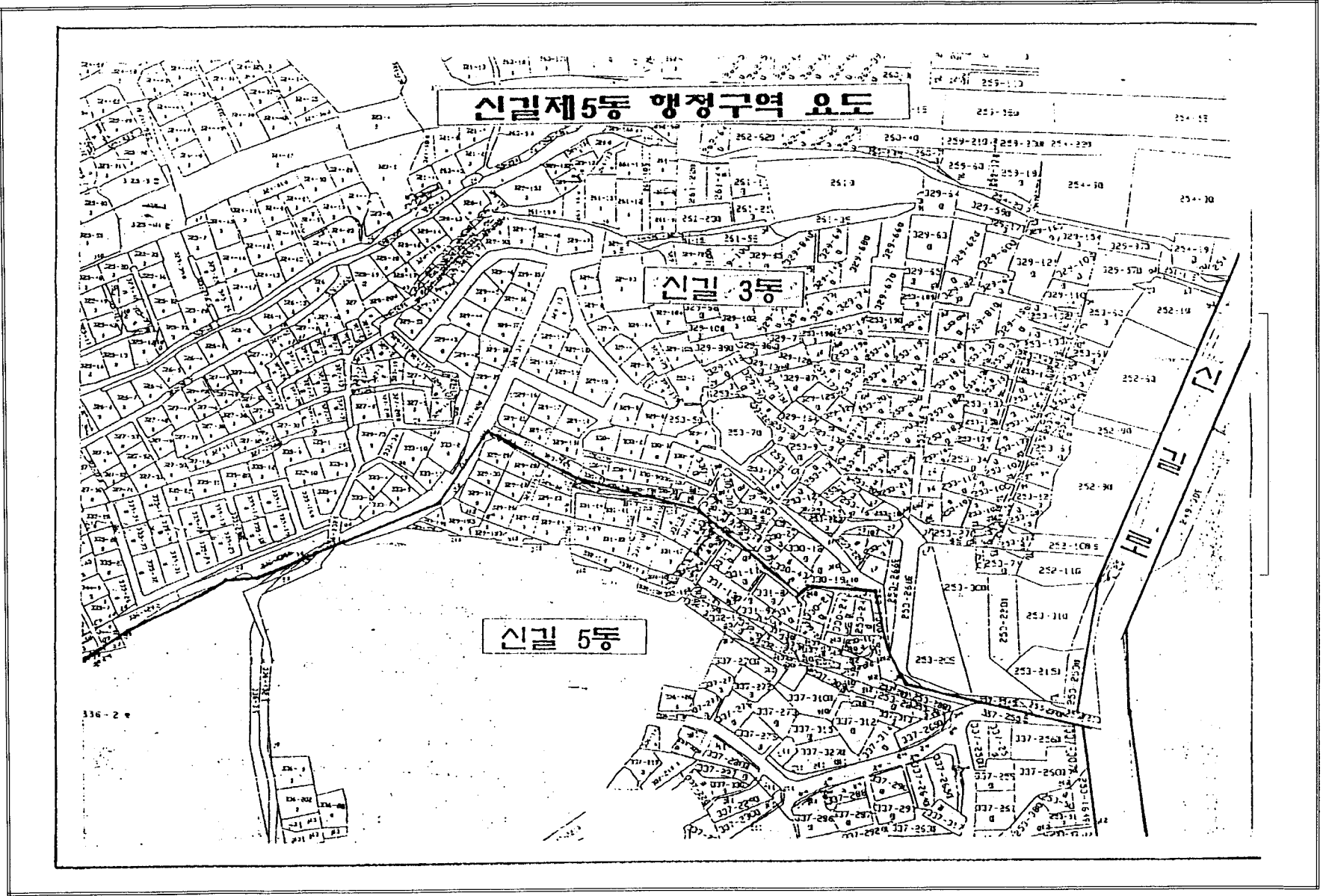


신길제4동 행정구역 요도(2)

신길 4동

신길 6동

신길 7동



신길제5동 행정구역 요도

신길 3동

신길 5동

신길제6동 행정구역 유도

신길 4동

신길 6동

신길 7동

